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칙

[초안 2018.04.01.] [시행 2018.04.28.]

[제1차 개정(일부) 2019.04.06.]

[제2차 개정(일부) 2019.10.26.]

[제3차 개정(일부) 2020.04.27.]

[제4차 개정(일부) 2021.04.05.]

[제5차 개정(전면) 2021.10.01.]

[제6차 개정(일부) 2022.07.10.]

[제7차 개정(일부) 2023.10.02.]

[제8차 개정(일부) 2024.01.30.]

[제9차 개정(일부) 2024.08.21.]

## 1장 총칙

### 2장 의결기구

#### 1절 통칙

#### 2절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

#### 3절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 3장 집행기구

#### 1절 학생회장단

#### 2절 비상대책위원장단

#### 3절 집행국

### 4장 학생자치기구

#### 1절 통칙

#### 2절 학과(학부) 학생회

#### 3절 미래융합대학 동아리

### 5장 특별기구

#### 1절 통칙

#### 2절 인수위원회

#### 3절 운영감사위원회

### 6장 재정

### 7장 선거

### 8장 회칙의 개정

### 부칙

##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하 미래융합대학 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미래융합대학 내 회원의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대학 문화 창출과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며 미래융합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내에 둔다.

## 제4조 【회원의 자격】

- 1) 본회의 회원은 미래융합대학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상태에 있는 자는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 2) 본회의 준회원은 본교의 휴학생으로 한다.
- 3) 준회원은 제5조 3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2) 본회의 회원은 인종, 사상,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소속, 출신 지역 등에 의해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3)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 관련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했을 경우)
- 4)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발전시키고 수호할 의무를 갖는다.
- 5)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학생자치활동으로 인한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에 대해 학교 당국의 관계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 6)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계획, 재정, 운영 전반에 관해 회원 전체의 이해관계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 권리를 갖는다.
- 7) 본회와 본회의 각 기구는 본조에 열거된 회원의 권리가 내·외부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하며,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수호할 적극적 의무를 갖는다.
- 8)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재정 부담의 의무를 갖는다. 단, 재정 부담이라 함은 미래융합대학 학생회비 납부를 말한다.
- 9) 본회의 회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등 자치기구 내 회의체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 【기구】**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 학생회장단, 비상대책위원장단, 집행국
3. 학생자치기구 : 학과(학부) 학생회, 미래융합대학 동아리
4. 특별기구 : 인수위원회, 운영감사위원회, 특별감사결정위원회
5. 이 외에도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학생대표자 회의에서의 신고 및 승인에 의해 임시기구를 둘 수 있다.

## 제7조 【대표자의 의무】

- 1) 제6조에서 규정한 기구의 대표자는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 2) 제6조에서 규정한 기구의 대표자는 민주적인 회의 진행과 정기적이고 투명한 결산 보고 및 활동 보고의 의무를 진다.
- 3) 제6조에서 규정한 기구의 대표자는 회원의 의사를 수렴해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4) 제6조에서 규정한 기구의 대표자는 각 기구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5) 제6조에서 규정한 기구의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 의결기구의 회의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 6) 제6조에서 규정한 기구의 대표자는 본회와 각 기구의 운영 및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위해 본인의 직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검칙 금지】**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동일한 호, 혹은 다른 호의 직을 둘 이상 가질 수 없다.

1. 미래융합대학 정·부학생회장
2. 각 학과(학부) 직선 대표자(학년 대표 이상)
3. 동아리를 제외한 학생자치기구의 대표자
4.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학생대표자 회의에서의 인준을 받는 직

### 제9조 【기록물 관리】

- 1) 제5조 6항에 따라, 제6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기구는 예산, 사업계획안, 결산에 대해 기록과 보관의 의무를 갖는다.
- 2) 본조 1항의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
- 3) 본회 회원이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 혹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를 통해 1항의 기록물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 2장 의결기구

### 1절 통칙

**제10조 【기본 이념】** 본회의 의결기구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11조 【의결기구의 위계】

- 1) 본회 의결기구 권한의 위계는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순으로 한다.
- 2)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을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 3)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4) 하위 의결기구에서 특별안건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상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하고자 할 때는 일반안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5) 상위 의결기구의 회의가 무산된 경우, 일반안건만 한 단계 하위 의결기구에서 특별안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하위 의결기구의 의장은 상위 의결기구의 차기 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회기】** 본회 의결기구의 회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눈다.

1. 제1회기 : 그 해 학사일정상 1학기 개강 당일 ~ 2학기 개강 전일
2. 제2회기 : 그 해 학사일정상 2학기 개강 당일 ~ 그 다음 해 학사일정상 1학기 개강 전일

### 제13조 【의장】

- 1)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정학생회장이 맡는다.
- 2) 정학생회장이 궐위·직무정지인 경우 부학생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 3) 정·부학생회장이 탄핵안 및 탄핵 소추안 상정으로 인해 모두 직무정지 상태인 경우,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한 명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며, 임시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 4)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인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 제14조 【의장의 의무】

- 1)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2)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 제15조 【의장 직무의 제한】

- 1) 정·부학생회장이 의장일 때,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 혹은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해서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1. 정·부학생회장 개인과 자기 관련성이 있는 안건
  2. 집행국 해임 건의안
  3. 의장이 물러나면 각 의결기구는 단과대학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한 명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임시의장의 인준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 제16조 【안건의 발의】

- 1)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의 안건은 소집 공고 전까지 발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 안건의 상정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 제17조 【안건의 의결】

- 1) 본회 의결기구는 특별한 의결 요건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2/3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 2) 1항의 안건을 “일반안건”이라고 칭하며, 일반안건보다 엄격한 의결 요건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특별안건”이라 칭한다.
- 3) 안건의 의결 시 의결요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구성원 수는 각 안건의 의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4) 의결기구의 의결권은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며, 직접 출석해 행사해야 한다.

### 제18조 【구성원의 의무】

- 1) 구성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2) 구성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3) 구성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4) 구성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2절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제19조 【지위】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이하 “단학대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제20조 【구성】

- 1) 학생회장단 및 학과(학부)학생회의 학년·반대표 이상 직선 대표자로 구성한다.
- 2) 각 단위의 정·부대표가 궐위 또는 미선출인 경우, 해당 단위의 회칙을 통해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 3) 제28조 5항에 따라 단학대회에서 자격이 정지된 구성원은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21조 【의장】 제13조에 따른다.

### 제22조 【소집】

-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2) 정기회의는 회기 중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해야 한다.
- 3)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요구
  2.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구성원 2/3 이상의 요구
  3. 단학대회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

### 제23조 【소집 공고】

- 1) 개최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부터 개최일까지 7일 이상 의장이 공고해야 한다. 단, 임시회의는 예외로 한다.
- 2)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4. 공고문은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의 관리하에 있는 플랫폼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4조 【개회·의결요건】

- 1) 재적 구성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일반안건은 재적 대표자 1/2 이상의 참석과 출석 구성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특별안건은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시 정족수 - 임시 단학대회는 회원 참석 수와 관계없이 개최하고 의결된 사항은 단학대회와 동일한 효력을 낸다.

### 제25조 【권한】

1) 일반안건

1. 제11조 2항에 따른 하위 의결기구의 결정에 대한 변경 및 취소권
2. 학생회장단 사퇴 허가 여부 심의·의결권
3. 집행기구·학생자치기구·특별기구 임명직 구성원에 대한 인준권
4. 예·결산안 및 사업계획·보고 인준권 (단, 재정 부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구성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인준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본회 기구에 대한 감사권
6. 회칙 개정 발의·심의·의결권
7. 세칙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심의·의결권
8. 임시기구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심의·의결권
9. 기타 의장 혹은 하위 의결기구가 발의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
10.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주는 사항의 심의 의결권 (단, 재정 부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구성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인준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운영위원, 집행국장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요구권
12. 학칙 개정 건의 및 사전 협의, 동의권
13. 기타 단학대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2) 특별안건

1. 본회 회원 및 기구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권 (단, 징계 의결 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
2. 집행기구·학생자치기구·특별기구 임명직 구성원 해임 심의·의결권 (단, 해임 의결 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
3. 집행기구·학생자치기구·특별기구 선출직 대표자 탄핵 심의·의결권 (단, 탄핵 의결 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
4. 자치회비에 관한 심의·의결권 (단, 재정 부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구성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학생회장단 탄핵 소추 심의·의결권 (단, 소추 의결 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
6.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 중 선임된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인준권
7.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사퇴 허가 여부 심의·의결권
8.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단의 탄핵 심의·의결권

### 제26조 【표결 방법】

- 1) 거수·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2) 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안건으로써 의장 또는 구성원이 제의해 출석 구성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무기명으로 표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수업을 포함한 각종 대면활동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단학대회의 의결을 통해 단학대회 표결을 비대면 혹은 서면으로 진행함을 결정할 수 있다.

### 제27조 【권한의 위임】

- 1) 단학대회가 무산 혹은 산회된 경우, 제11조 5항에 따라 일반인간에 한해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로 그 의결의 권한을 위임한다.
- 2) 제25조 2항 중 1호, 5호는 본조 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할 수 없다.

### 제28조 【징계에 대한 의결】

- 1) 회원, 집행기구, 학생자치기구, 상설기구, 특별기구의 구성원이 본회의 회·세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 2)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으로 하며, 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시 요구
  2.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3. 제명
  4. 학교당국 혹은 사법기관에의 고발
- 3) 상설·특별기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으로 하며, 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시 요구
  2. 당 회기 혹은 차기 회기의 예산 삭감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4. 대표자에 대한 사퇴 권고
  5. 해당 기구의 소속 자격 박탈
- 4) 학생자치기구 대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 수준을 결정해 해당 단위 회원 1/2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집행하며, 해당 단위 대표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2주간 공고해야 한다. 이때, 징계 수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으로 하며, 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시 요구
  2.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3. 대표자에 대한 사퇴 권고
- 5) 단학대회 구성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으로 하며, 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단학대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구성원 자격 정지 (하위 의결기구의 구성원을 겸하는 자는 하위 의결기구 구성원의 자격도 정지된다.)
  3. 구성원 제명 (하위 의결기구의 구성원을 겸하는 자는 하위 의결기구 구성원의 자격도 제명된다.)
  4. 학생회장단에게는 2항 3호, 5항 2호와 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5. 징계 의결 전, 징계의 대상이 되는 자 혹은 기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
  6. 징계를 의결하면 집행국은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해야 한다.

### 제29조 【업무 및 권한】 단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본회의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의결권
- 2)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주는 사항의 심의 의결권 (학생회비, 졸업 준비비, 교지비 등)
- 3) 단과 집행국 각 국장의 해임 의결권

- 4) 운영위원, 집행국장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요구권
- 5) 단과 학생회 회칙에 규정된 단체의 사업계획, 사업 보고에 따른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권
- 6) 신규 자치단체의 승인권
- 7) 각 자치기구의 내규심의 승인권
- 8) 집행국 국장의 임원 일괄 인준권
- 9) 학칙 개정 건의 및 사전 협의, 동의권
- 10) 단과 학생회 회칙에 규정된 단체의 감사권
- 11) 단과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탄핵소추권
- 12) 학과 학생회를 제외한 각 자치기구의 회장 및 위원장 탄핵소추 및 결정권
- 13) 감사 결과 부정 발견 시 해당 책임자에 대한 징계 혹은 탄핵소추 및 결정권
- 14)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인준권
- 15) 기타 단학대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3절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제30조 【지위】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라 한다.)는 본회의 상임의사결정기구이다.

### 제31조 【구성】

- 1) 학생회장단, 각 학과학생회 정·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2) 각 단위의 정·부대표가 궐위 또는 미선출인 경우, 해당 단위의 회칙을 통해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 3) 집행국 집행위원장이나 학생자치기구·특별기구의 대표자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참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참관할 수 있다.
- 4) 제28조 5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구성원은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32조 【의장】 제13조에 따른다.

### 제33조 【소집】

-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2)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해야 한다.
- 3)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요구
  2. 단운위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

### 제34조 【개회·의결요건】

- 1)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출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안이 3가지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된 안으로 의결한다.

### 제35조 【표결 방법】

- 1) 거수·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2)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수업을 포함한 각종 대면활동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표결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제36조 【권한】

- 1) 요구권
  1. 제22조 3항에 따른 단학대회 소집 요구권
- 2) 일반안건
  1.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권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권
  3. 본회와 본회 각 자치기구의 활동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한심의·의결권
  4. 본회 예산에 대한 심의권
  5. 본회 보정예산에 대한 단학대회 상정 여부 결정권
  6. 제2회기 중 학생회장단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선임권
  7. 단학대회 무산에 의해 권한 위임된 안건의 심의·의결권
  8. 운영감사 결과에 따라 회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징계 청구권(단, 본 안건의 경우 징계 대상자는 의결할 수 없다.)

## 3장 집행기구

### 1절 학생회장단

#### 제37조 【지위】

- 1) 정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
- 2) 부학생회장은 정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정학생회장이 궐위인 때에 그 직위를 대행한다.

#### 제38조 【권한】

- 1) 본회 사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 2) 집행국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3) 본회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 4) 집행국의 구성권을 갖는다.
- 5) 집행국의 임명·해임권을 갖는다.
- 6) 집행국의 산하 국서를 지휘·감독한다.
- 7) 집행국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8)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해 학교당국에 의사를 개진하고,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 9) 본회와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본회를 대표해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대외적 협의·본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는 활동·본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단학대회 혹은 단운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0) 정학생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해 단학대회의 동의를 받아 임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구 구성원의 임명권을 갖는다.

#### 제39조 【의무】

- 1) 본회 회원의 의사를 수렴해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집행기구의 대표로서 본회 의결기구에 집행기구의 집행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3) 집행기구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4)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 의결기구 회의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6) 인수인계를 원활히 진행해,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학생회장단 혹은 학생회장단이었던 자가 본회의 대표로서 학교 당국과의 논의를 진행할 때,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해 단운위와 협의해야 한다.

#### 제40조 【임기】

- 1) 당선된 당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보궐 및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공고 24시간 이후 익월부터 당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본 선거의 경우 2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진다.
- 2) 차기 학생회장단의 미선출 혹은 궐위 시, 단운위에서 대행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한해 그 임기를 재선거 종료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41조 【연임 금지】

- 1) 정학생회장은 차기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정학생회장·부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 2) 부학생회장은 차기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부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 제42조 【사퇴】

- 1) 학생회장단이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단운위의 심의를 거쳐 단학대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 2) 정학생회장이 사퇴한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위를 대행한다.
- 3) 학생회장단이 제1회기 중 모두 사퇴한 경우, 제101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4) 학생회장단이 제2회기 중 모두 사퇴한 경우, 제45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단을 선임한다.

#### 제43조 【탄핵】

- 1) 제39조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혹은 본회 구성원으로서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킨 경우,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
- 2)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 소추는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3)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단운위에 제출함으로써 발의될 수 있다.
  1. 단운위 구성원 2/3 이상의 서명
  2. 단학대회 구성원 1/3 이상의 서명
- 4)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발의로부터 3일 이내에 단운위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로 제13조 3항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5) 4항에서 선출된 단운위 임시의장은 탄핵 소추안 발의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 단학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 6) 5항의 회의가 무산된 경우, 탄핵 소추안 혹은 탄핵안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7) 정학생회장만 탄핵당할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위를 대행한다.
- 8) 학생회장단이 제1회기 중 모두 탄핵당한 경우, 제101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9) 학생회장단이 제2회기 중 모두 탄핵당한 경우, 제45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단을 선임한다.

#### 제44조 【직무의 정지】

- 1) 제43조 3항에 따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대상은 발의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 2) 1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대상은 제43조 5항의 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혹은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제 43조 6항으로 인해 부결됐을 때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 2절 비상대책위원장단

**제45조 【선임 요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항의 공고 48시간 이내에 단운위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로 단운위 구성원 중 비상대책위원장 1인, 비상대책부위원장 1인을 선임한다.

1.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상황에서 단운위가 대행 의사를 표했을 경우
2.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상황에서 단운위가 대행 의사를 표하지 않고, 졸업 등의 학적 변동이 발생하여 학생회장단이 궐위됐을 경우
3.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재선거 또한 무산됐을 경우
4. 제2회기 중 학생회장단 모두가 사퇴했을 경우
5. 제2회기 중 학생회장단 모두 탄핵 당했을 경우

**제46조 【지위】**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제47조 【권한】**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제48조 【의무】

- 1) 학생회장단의 공백 상황에서 행정 제반업무를 비롯한 본회의 운영 및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 2) 선임 직후 단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3) 집행기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집행국을 구성해야 하며, 집행국은 단학대회의 인준을 받되, 부득이한 경우 단운위에서 인준 받을 수 있다.
- 4) 그 외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의무를 갖는다.

#### 제49조 【임기】

- 1) 선임으로부터 당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제45조 1호, 2호로 인해 선임된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임기는 학생회장단 재선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단, 본 선거의 경우 2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진다.
- 2) 차기 학생회장단의 미선출 혹은 궐위 시, 단운위에서 대행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한해 그 임기를 재선거 종료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50조 【사퇴와 탄핵】

1) 비상대책위원장 혹은 비상대책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를 해야 할 경우, 제25조 2항에 따라 단학대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 혹은 비상대책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별도의 소추 절차 없이 제25조 2항에 따라 단학대회가 의결한다.

#### 3절 집행국

**제51조 【지위】**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제52조 【구성】

- 1)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국의 구성원이 된다.
  1. 학생회장단
  2. 집행국 집행위원장
  3. 집행국 산하 각 국서의 국·부·차장 및 국원
- 2) 학생회장단의 궐위로 비상대책위원장단이 선임된 경우, 1항 1호의 학생회장단을 대리해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행국의 구성원이 된다.

**제53조 【집행국 집행위원장】** 학생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 집행에 관해 학생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각 국서를 관리·감독한다.

**제54조 【국서】** 학생회장단이 임의로 구성한다.

#### 제55조 【업무 및 권한】

- 1) 본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2) 집행국의 사업 계획서와 예·결산안을 본회 의결기구에 제출한다.
- 3) 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4) 본회 의결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 5) 본회 의결기구의 개회·시행을 준비한다.
- 6) 집행국 집행위원장과 산하 각 국서의 국·부·차장 및 국원은 학생회장단의 임명으로 업무를 개시하고, 단학대회에서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집행국에 대한 사후 인준이 부결된 경우 부결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인준된 것으로 본다.

**제56조 【임기】**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임기를 가지며,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연장된 경우 집행국의 임기 또한 연장된 것으로 본다.

#### 4장 학생자치기구

##### 1절 통칙

**제57조 【기본 이념】** 각 기구의 회원을 대표하며, 그 운영은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이어야 한다.

##### 제58조 【회칙】

- 1) 자율적 활동을 위해 단과대학 학생회칙에 준하는 독자적인 자치회칙을 갖는다.
- 2) 각 자치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회칙을 따른다.

2) 제31조 3항에 따라 단운위 구성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출석해 활동 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 2절 인수위원회

**제69조 【지위】** 집행국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차기 학생회 집행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이다.

## 제70조 【구성】

- 1) 차기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단 및 집행국의 업무 인수를 위해 당선 확정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학생회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단, 재·보궐선거로 당선됐을 경우 구성하지 않는다.
- 2) 학생회 인수위원장은 차기 학생회장단이 파견하는 인수위원 중 1인으로 한다.
- 3) 현 학생회장단 혹은 비상대책위원장은 집행국 국장 2인 이상을 학생회 인수위원회에 파견해 원활한 인수인계를 도와야 한다.
- 4) 차기 학생회장단은 최소 3인 이상의 차기 집행국 구성원 내정자를 학생회 인수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1조 【업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행국의 조직·기능 및 재정 현황의 파악
2. 학생회장단과 집행국의 주요 사업 분석
3. 차기 집행국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준비
4. 기타 학생회장단과 집행국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반 업무

**제72조 【해산】** 차기 학생회장단 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해산한다.

## 3절 운영감사위원회

**제73조 【지위】** 본회 모든 학생자치기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본회의 재정, 공약 이행, 회칙 준수 등의 사항을 감사한다.

**제74조 【구성】** 운영감사위원장과 학과(학부)별 1인 이상의 운영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단학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단, 학과(학부)별 인원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단학대회에서 인준 받는 것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 제75조 【위원장】

- 1) 운영감사위원장은 운영감사위원을 2학기 이상 수행한 자 중 1인으로 선임한다.
- 2) 운영감사위원 중 적합 인원 전체가 운영감사위원장직을 거부할 경우, 미래융합대학 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이때 단학대회에서 인준하며, 제75조 1항의 조건은 무시한다.
- 3) 운영감사위원장은 재정 부담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한다.
- 4) 운영감사위원장은 총학생회 특별기구 중앙감사위원으로서의 의무를 갖는다.

## 제76조 【업무 및 권한】

## 2절 학과(학부) 학생회

**제59조 【지위】** 각 학과(학부)의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제60조 【구성】** 각 학과(학부)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1조 【학생회장단】** 각 학과(학부) 소속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학과 학생회장단은 각 학과 회원을 대표하며 학대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62조 【업무 및 권한】** 해당 단위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학과 운영위원회 및 학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 3절 미래융합대학 동아리

**제63조 【지위】** 본회 회원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개별 주제 욕구를 충족시키며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및 본회 전체의 이익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기구이다.

## 제64조 【구성】

- 1) 동아리 구성인원은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으로 동아리 대표자와 회원을 포함하여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4개 학과(전공)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동아리 최소 구성 인원 중 동시에 3개 이상의 동아리를 가입한 구성원의 경우 최소 구성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같은 목적과 분야의 동아리는 2개 이상 등록할 수 없다.

## 제65조 【업무 및 권한】

- 1) 본회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 2) 미래융합대학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3) 이외의 사항은 관례 및 자치 내규에 따른다.

**제66조 【운영 규정】** 미래융합대학 동아리의 세부 운영 규정은 미래융합대학 동아리 운영 세칙으로 규정하여 단학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67조 【업무 및 권한】

- 1) 각 부서에 속해 본회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 2) 미래융합대학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3) 이외의 사항은 관례 및 자치 내규에 따른다.

## 5장 특별기구

### 1절 통칙

## 제68조 【권리와 의무】

- 1) 특별기구의 대표자는 단학대회에 참관할 수 있다.

- 1) 예·결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 2) 정기 감사를 진행할 때, 운영감사위원회는 본인이 소속한 학과(학부)를 제외한 타 단위의 감사만 진행할 수 있다.
- 3)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대상은 운영감사위원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4) 감사 과정에서 감사 대상 기구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7조 【감사의 시기와 기간】

- 1) 정기감사 : 정기감사는 재정감사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하며 공고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한다.
- 2) 특별감사 : 특별감사결정위원회 시행이 의결된 후 5일 이내에 공고하며 공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 제78조 【감사 대상 자료】

- 1) 재정감사 제출서류
- 2) 해당 단위 회칙
- 3) 참석 의무가 있는 회의체의 출결 확인 서류(회의록 등)
- 4) 공약 이행 자체평가서
- 5) 기타 운영감사에 필요한 자료

### 제79조 【기준사항】

- 1) 재정감사 기준을 포함한 재정 운영에 대한 전반
- 2) 공약 이행 여부
- 3) 회/세칙 준수 여부
- 4) 기타 감사와 관련된 사항

**제80조 【자료 제출 시한】** 감사 대상 기구에 요구한 자료는 요구된 기간 내에 재정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1조 【참관인 및 증인】** 감사에 지장이 없는 한, 참관인의 입회를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2조 【감사결과와 보관 및 공개】

- 1) 감사 결과 보고서 및 감사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본회 회원에게 전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2) 감사 대상 기구는 감사 시행이 완료되면 7일 이내에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 및 그에 대한 자료를 1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83조 【감사시행세칙】**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바는 감사시행세칙으로 규정하여 단학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 6장 재정

### 제84조 【재원】

- 1)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보조금, 발전기금 및 기타수익금을 기반으로 한다.
- 2)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할 수 없다.

**제8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전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까지 1년으로 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회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실시한다. (회계결산 기간은 11월 마지막 주이며, 회계 결산 기간 내에 학생회비 지출은 지양해야 하고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 제86조 【회비】

- 1) 본회 회원의 납부를 통해 학내 자치기구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본회 회원의 복지와 권리 신장을 위해 사용되는 회비이다.
- 2) 자치회비 수준의 변경은 단운위 심의를 거쳐 단학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 3) 매년 1회 납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과 학생회비는 자율적으로 납부 기간을 둘 수 있다.
- 4) 학생회비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상반기 예산안 승인 이전에 휴학 혹은 자퇴 등 학적상의 변동이 발생한 납부자에 대하여 진행한다.

### 제87조 【재원의 사용】

- 1) 재원은 학생 권리 신장과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2) 재원을 사적으로 운용하거나 이윤 창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
- 3) 대출 등 채무를 통한 재원의 충당은 인정하지 않으며, 채무의 책임 또한 이전되지 않는다.
- 4) 사용된 재원에 대한 영수증 및 결산을 정리해 보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단, 직전년도 이월금에 한하여 원활한 사업 준비를 위하여 단학대회 예산안 승인 이전에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운위를 거쳐 차회 단학대회에 결산안을 상정해야 한다.

### 제88조 【회비 계좌】

- 1) 본회 기구의 차기 대표자는 임기 개시부터 새로 출범할 기구의 계좌를 신설하거나 기존 계좌의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 2) 각 자치기구의 계좌 개설은 단일 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89조 【예산 편성 및 심의】** 집행국은 회기별로 사업 예산안을 편성해 단운위의 심의를 거쳐 단학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90조 【예산의 승인】** 제88조에 따라 단운위는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고, 직후의 단학대회에 상정해야 한다.

### 제91조 【결산】

- 1) 각 사용에 대한 일시와 내역,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2) 1항의 결산은 단학대회 개회 전까지 사용한 것을 취합해 결산안으로 작성하고, 단운위에 보고해야한다.
- 3) 결산안은 단운위에서 심의해 단학대회에 상정해야 한다.
- 4) 결산안을 단운위에 제출하지 않거나 재정 집행 부정이 발견된 경우, 특별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5) 단학대회에서 결산안이 승인되면, 각 기구의 대표자는 이를 5일 이내 본회 회원에게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92조 【감사】

- 1) 재정을 사용하는 본회 모든 기구는 재정감사위원회 및 운영감사위원회의 감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 2) 재정감사위원회 및 운영감사위원회 감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이 발견된 대표자는 대표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3) 재정감사위원회 및 운영감사위원회 감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이 의심되는 대표자는 단학대회의 감사 및 징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7장 선거

**제93조 【목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장단 및 제6조에서 정의한 학생자치기구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인 선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4조 【선거권】

- 1) 본회의 회원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선거권을 갖는다.
- 2) 선거권은 미래융합대학의 재학생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당해 학기 등록자에 한한다.

**제95조 【피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제4조, 제5조와 아래 각 호에 따라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정학생회장은 본교에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하며, 부학생회장은 본교에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한다.
2.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공동으로 입후보해야 한다.
3. 학생회장단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으로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의 피선거권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정지된다.
5. 본회 징계의 사실이 발생한 자의 피선거권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차회 선거까지 정지된다.
6. 각 학생자치기구의 피선거권은 해당 기구의 회세칙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되지 않은 경우 상위 회세칙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 제96조 【선거 방법】

- 1) 선거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한다.
- 2)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원칙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 3) 단운위는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수업을 포함한 각종 대면 활동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당해 학생회장단 선거의 온라인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4) 단운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진행 방식에 대해 선거 공고 입후보자 등록 마감 전까지 반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 제97조 【당선인 결정】

- 1) 학생회장단 당선인은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 최다득표자로 한다.
- 2) 단선일 경우, 본 회 재적인원 2/5 이상의 투표 및 투표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 3) 경선일 경우, 본회 재적인원 2/5 이상의 투표로 개표해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 4) 최다득표자가 복수일 때, 무효표가 득표차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시행한다.

**제98조 【선거 시기】** 학생회장단 선거 시기는 당해 단운위에서 결정한다.

## 제99조 【선거관리위원회】

-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로부터 35일 전에 학생회장단에 제4장에 명시된 학생자치기구 대표자 중 20인 이내로 구성해 단운위의 인준을 받는다.
-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출된 의장이 맡는다.
- 3) 선거관리위원은 차기 대표자 선거 출마, 군 입대, 휴학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사퇴할 수 있다.
-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확정을 기점으로 해체된다.

## 제10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1조 【재·보궐선거】

- 1) 선거 무산, 당선 무효, 임기 시작 전 당선인 궐위 등이 발생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며 그 시기는 이듬해 3월로 한다. 이때, 선거 일정은 본 선거에 준한다.
- 2) 제1회기 중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제13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단을 선임하여 선거 과정을 총괄하게 하고, 궐위 확정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 시행을 공고해야 한다.

## 제102조 【선거시행세칙】

- 1) 기타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바는 선거시행세칙으로 규정하여 단운위의 승인을 받는다.
- 2) 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이 공고되면 세칙 개정은 불가능하다.
- 3) 선거시행세칙은 개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 혹은 단운위의 의장이 공포한다.

## 8장 회칙의 개정

**제103조 【발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 1) 단운위의 심의를 거친 본회 의결기구 의장의 발의
- 2) 단학대회 구성원 1/3 이상의 발의

**제104조 【공고】**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발의로부터 3일 이내에 정학생회장이 이를 공고하되, 이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 제105조 【의결】

- 1)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제25조 1항에 따라 단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2) 발의된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5일 후에 의결할 수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때, 14일을 초과한 경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6조 【공포】** 단학대회에서 개정이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5일 이내에 단학대회 의장이 공포하며, 공포 즉시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 본 개정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의해 선거방법이나 임원이 변경될 경우】** 본 회칙 효력 발생 전에 구성된 모든 자치 기구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전 회칙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준용】**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기구 회칙과 관례 및 단학대회에서의 의결에 따른다.